

실업 보험 급여 유연성에 대한 고용부의 임시 규정

2020 년3 월8 일 브라운(Brown) 주지사는 전염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 20-03 호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이러스의 영향과 확산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오리건 주 근로자들과 기업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업 보험 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규정은 COVID-19 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상황과 그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에 적용할 수 있는 실업 보험 조항을 명시합니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조항은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 년3 월8 일에 소급 적용됩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은 "COVID-19 관련 상황" 으로 간주됩니다.

- (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무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c) 의료진 또는 공공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또는 확산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d) 주지사 또는 공공 보건 당국의 지시 또는 권고에 의한 폐쇄나 축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용주가 운영을 중단했거나 축소했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의무 격리 대상인 가족이나 그 외 사람과 함께 살거나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자택에 머물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f)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유아 보육 시설, 그 외 유사 기관의 폐쇄로 자녀를 자택에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g) 의무 격리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주지사의 활동 제한 지시를 위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며 근무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2) 실업 보험 급여 실격 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ORS 657.176(2)(b))
- (b)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사직한 경우(ORS 657.176(2)(c))
- (c) 고용 사무소 또는 담당자가 추천했는데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구직 신청을 못한 경우(ORS 657.176(2)(d))
- (d)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고용 제안을 수락하지 못한 경우(ORS 657.176(2)(f))

(3) 근무가능 - ORS 657.155(1)(c) 및 연방법에 따라, 실업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a) 다음과 같은 이유는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또는 확산 위험으로 인해 의료진 또는 공공 보건 당국의 권고로 격리 중이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

(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또는 독감과 같은 증상으로 집에서 앓고 있는 경우. 질병 때문에 집에 있기 시작한 이후로 일제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

(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중이거나 다른 제도화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환수가 주중 절반 이하이고 그 주의 일제의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

(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또는 독감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어서 적절한 일을 제인받고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동안 근무할 수 없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 ORS 657.155(1)(c) 및 연방법에 따라, 실업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연방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은 **주정부가 COVID-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구직 요건에 관한 실업 보험법을 일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 4102(b) 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COVID-19 확산을 완화하는 데 있어 공공 보건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OAR 471-030-0036 에도 불구하고 2020 년 3 월 28 일에 종료되는 주부터 시행되며, 고용부에서 별도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주 및 지역 비상사태 선포가 만료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구직 활동을 원할 경우 ORS 657.155 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근무할 수 있음 - ORS 657.155(1)(c) 및 연방법에 따라, 실업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고용주가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있거나 의료진 또는 공공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권고나 정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확산될 위험으로 인해 자택에 있거나 격리된 경우.

(b) 학교, 탁아소 등의 폐쇄 또는 축소로 인하여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 부족해 자택에 홀로 있는 경우.

(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자택에 있는 경우.

(d) 이들은 일반적으로 풀타임 미인으로 일하며 풀타임 미인의 업무만이 가능합니다.

(6) ORS 657.315(2)는 초과 지급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구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불 회수가 형평과 양심에 위배되는 경우, 초과 지불액 회수의 면제를 허용합니다. OAR 471030-0053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상황과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때, 2020 년 3 월 28 일 끝나는 주부터 몇 주 동안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초과 지불액을 회수하는 것은 형평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비상사태 선포가 만료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회수 활동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사 업 지 원 • 고 용 축 진